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4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 제안이유

-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 활성화로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

나. 주요골자

- 리버버스 운영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축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 등 주요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정요구,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정의),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나. 예산조치: 연도별 운항결손액 재정지원금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

다. 협의 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동의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위원 자격요건의 구체성, 객관성 높일 것)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검토서 제출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 8. 24.~9. 1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 확보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하는 면적(수역과 둔치 39.8km²)을 차지하는데도 올림픽대로 등 제방도로로 인한 단절, 대중교통과의 연결 곤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강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¹⁾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 체증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육상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길 원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버버스’라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2)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1) 이동이 편리한 한강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4대 핵심전략 중 ‘이동성 확장’ 과제

(제5조), 재정지원(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6조),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제21조), 업무협약(제22조) 등 총 2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조(제목)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 리버버스, 운항결손액, 환경친화적 선박 등 관련 용어 정의
제5조(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 리버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재정의 지원)	- 운항결손액 등 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 선박 매입 자금 등 지원 사항 규정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사항 규정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규정
제21조(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 사업자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사항 규정
제22조(업무협약)	-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규정

- 세부적으로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2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리버버스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인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수단²⁾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제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이용 수요나 선착장 설치 위치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이용 특성과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항 노선 및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는 운항결손액(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금액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아직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리버버스의 향후 운영에 관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작성은 귀책 사유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임.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한강에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친환경선박법」에 명시된 사항³⁾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규정하려 하는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모호하고 특히 기자재 설치나 교체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안 제13조는 시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이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점은 타당할 것임.

다만, 한강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다수가 민간 물량인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편, 안 제10조부터 제13조 중 법령의 약칭을 ‘친환경선박법 시행령’과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비가 필요할 것임.

3) 참조 : 「친환경선박법」 제10조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리버버스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위원회는 운항결손액 관련 재정지원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등의 지원까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내용(위원 자격 요건의 구체성, 객관성 높일 것)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 안 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지원 조사, 시정 요구,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증진 및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2조는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동시에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례안 처리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절차상 타당했을 것임.

- 전반적으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육상 교통수단의 한계(교통 체증 등)로 인해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인 리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본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또한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기자재 설치와 교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상위법령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4
----------	------------

제안년월일: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기자재 설치와 교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상위법령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기자재 설치와 교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 상위법령 용어 약칭을 수정함(안 제2조, 제10조~제13조).
- 미비한 표현을 수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한다)”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도선법”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친환경선박법”을 “법”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를 “매입 및 개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에서”를 “시행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친환경선박법 시행규칙”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안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17조제3항 중 “위축한다”를 “위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리버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1.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 “리버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도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 -----.
3. ~ 5. (생략)	3. ~ 5. (제정안과 같음)
6.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 ----- -----법----- ----- -----.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 -----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
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
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
법 등은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른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시장은 선령(船齡) 등이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
자에게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
법 등은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른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

----- 매입 및 개조 ----

-----.

②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이라 한
다) -----.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시행령 -----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
시행령에서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시행령 -----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
유가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
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
회 의원과 교통·친환경에너지·선
박·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
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
-----.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버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리버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리버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4. “지출금”이란 리버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지출, 부대사업 지출 등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리버버스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리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리버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장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제5조(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시장은 이용 수요, 선착장 설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버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선사업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확보
4. 리버버스 홍보 등 리버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승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해진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을 어기면서 운항하는 행위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리버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가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선박 내·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박의 연료 용기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선박 운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의 기능이나 구명장비, 선착장 안내, 요금 결제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 및 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선한 경우 가까운 선착장에 하선하도록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리버버스 운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지원 금액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와 제22조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9조(외부감사)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

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및 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러 선박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시장은 선령(船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게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가 구축·운영·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연료공급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 이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교통·친환경에너지·선박·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⑩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장 시정요구 등

제18조(사업자에 대한 평가 등)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요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제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금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 경우
2. 사정변경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0조의 시정요구 또는 재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협약) 시장은 리버버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